

제 정 : 1998. 5. 22

개 정 : 2002. 3. 9

개 정 : 2016. 3. 18

개 정 : 2021. 8. 17

경영위원회 운영규정

삼성중공업주식회사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경영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(개정 : 2016.3.18)

제 1 조 2 (적용범위)

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2 조 (권한)

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,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결의사항을 제외한 회사의 제반업무집행에 대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성

제 3 조 (구성)

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상임이사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로 구성한다

제 4 조 (의장)

① 위원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
②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르고, 대표이사 전원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다.

제 5 조 (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의 출석 등)

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안설명을 시키거나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의

제 6 조 (종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매월 (2,4)주 (화)요일에 개최한다. 다만, 개최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하며, 정기위원회일에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개최일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 7 조 (소집권자)

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다.

제 8 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, 1일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9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화상회의 등 기타 유·무선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 (이사회와의 관계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결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 단, 결의사항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는 원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제 11 조 (긴급사항 등의 의결)

- ① 긴급을 요하는 사안 또는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사안으로서 위원회를 소집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의장이 판단하여 이를 사전에 집행할 수 있다.
- ② 전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경위와 집행사항을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12 조 (서면결의)

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중 간이한 사항이나, 제11조의 긴급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.

제 4 장 부의사항

제 13 조 (부의사항) (개정 : 2021.8.17)

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업무를 제외한 회사의 제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.

(개정 : 2021.8.17)

1.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

- 1) 경영계획의 승인
- 2)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
- 3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 · 이전 또는 폐지
- 4)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 경영현안

2. 재무 등에 관한 사항

- 1) 5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년도말 자기자본 10% 미만의 타법인 출자, 출자지분 처분
- 2) 5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년도말 자기자본 10% 미만의 해외 직접투자
- 3) 5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년도말 자기자본 10% 미만의 담보제공, 채무보증
(회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Bond는 제외함)
- 4) 10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년도말 자기자본 50% 미만의 차입계약 체결
- 5) 기타 기준금액에 상관없이 금융기관 또는 외부기관이 이사회에 준하는 위원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

3. 기타

- 1)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정
- 2) 이사회가 수시로 위임한 사항
- 3) 기타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영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경영사항

제 5 장 기타사항

제 14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경과 요령 및 결과는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간사부서에서 보존한다.
- ② 의사록은 필요할 경우 집행부서의 업무집행을 위해 집행부서에서 사본으로 보관할 수 있다.

제 15 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.

제 16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(1998.5.22)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2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부 칙 (2002.3.9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6.3.18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8.17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